

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11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평창군의 산불방지를 위하여 활동하는 개인·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
에서 지원하는 비용에 대하여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
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「산림보호법」 제33조 제3항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하여 활동하는 개
인·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을 위한 물품
및 비용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제5조 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- 1) 입법예고(2023. 09. 20. ~ 2023. 10. 1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비규제[기획실-5426 (2023.09.14.)]
- 3) 부패영향평가 : 부패유발요인없음[기획실-5426 (2023.09.14.)]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: 개선할 사항 없음[가족복지과-9730 (2023.09.19.)]

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군수는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·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산불예방 및 감시
2. 산불 진화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산불방지 지원) <u>군수는 「산림보호법」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를 위하여 활동하는 개인·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개인(이장) 산불방지 보상금</u></p> <p>2. <u>산불방지 자생단체 산불방지 보조금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5조(산불방지 지원) <u>군수는 산불방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·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<u>산불예방 및 감시</u></p> <p>2. <u>산불 진화</u></p> <p>3. <u>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</u>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산림보호법

제33조(산불의 예방 등) ① 산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산불의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,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산림청장은 산불의 효율적인 예방·진화체계를 마련하여야 하며,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산불을 예방하고 산불이 발생하면 진화하여야 한다.

③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산불에 대비하여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인력, 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산림청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산불진화 헬리콥터 등 산불진화장비를 도입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④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산불 예방과 진화에 필요한 장비 등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
⑤ 산림청장 또는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산불방지에 관한 연구·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.

⑥ 제3항 후단에 따른 산불진화장비의 종류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(제3조제5항 관련)

1. 비용발생 요인

- 산불 관련 물품 구입 및 지급 등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 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한 비용발생은 연평균 5천만원 미만 발생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경제건설국 산림과장 이 성 모
연락처	(033) 330 - 2450